

# 부 산 가 정 법 원

## 판 결

사 건 2014드단○○○○ 혼인의 무효

원 고 김AA

피 고 누BB

변 론 종 결 2014. 7. 16.

판 결 선 고 2014. 8. 13.

##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3. 12. 30. 양산시 물금읍장에게 신고하여 한 혼인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주위적 청구취지 : 주문과 같다.

예비적 청구취지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이 유

###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한민국 국적의 남자이고, 피고는 우즈베키스탄공화국 국적의 여자이다.

나. 원고는 2013. 12. 25. 피고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에서 혼인하고, 2013. 12. 30. 양산시 물금읍장에게 혼인증서를 제출하여 혼인신고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4. 3.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원고와 혼인생활을 시작하였으나, 잠자리를 거부하고, 2014. 3. 14. 가출하여 외국인여성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다.

라. 피고는 2014. 3. 14. 부산 북부경찰서 구포지구대에 '피고가 채팅하고 있는 원고의 오른쪽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렸다'는 취지로 고소하였다가 2014. 3. 24. 위 사건을 이첩 받은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피고가 채팅하고 있는 원고의 휴대전화를 빼앗는 과정에서 피고의 손이 원고의 뺨에 살짝 부딪힌 사실은 있으나, 폭행한 사실은 전혀 없고, 대한민국에 시집와서 생활한지 3일 가량 지났는데 생활이 힘들어 허위로 진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이에 이 사건을 송치 받은 부산지방검찰청은 2014. 5. 22. 피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 2. 판단

가. 민법 제815조 제1호가 혼인무효의 사유로 규정하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란 당사자 사이에 사회관념상 부부라고 인정되는 정신적·육체적 결합을

생기게 할 의사의 합치가 없는 경우를 의미하므로, 당사자 일방에게만 그와 같은 참다운 부부관계의 설정을 바라는 효과의사가 있고 상대방에게는 그러한 의사가 결여 되었다면 비록 당사자 사이에 혼인신고 자체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어 일응 법률상의 부부라는 신분관계를 설정할 의사는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혼인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치가 없는 것이어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0. 6. 10. 선고 2010므574 판결 등 참조).

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참다운 부부관계를 설정하려는 의사가 없음에도 단지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취업하기 위한 방편으로 혼인신고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혼인의 합치가 없는 것이어서, 그 혼인은 민법 제815조 제1호에 따라 무효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철